

희망찬 도약!  
청년이 찾는 큰 목포



---

#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

---

 목포시

# 목 차

## I 보건·복지·인구 분야

- ① 취약계층 마음 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(신규) ..... 6
- ②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..... 7
- ③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..... 8
- ④ 코로나19 검사 지원체계 변경 ..... 9
- ⑤ 매독 3급 감염병 상향 조정 ..... 10
- ⑥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상승 ..... 11
- ⑦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..... 12
- ⑧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..... 13
- ⑨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규모 확대 ..... 14
- ⑩ 부모급여 지원 ..... 15
- ⑪ 아동발달지원계좌(디딤씨앗통장) ..... 16
- ⑫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..... 17
- ⑬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..... 18
- ⑭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..... 19
- ⑮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..... 20
- ⑯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..... 21
- ⑰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..... 22
- ⑱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령 확대 ..... 23

## II 일자리 · 경제 · 문화 분야

---

- ①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(신규) ..... 25
- ②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방안(신규) ..... 26
- ③ 전남형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(신규) ..... 27
-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..... 28
- ⑤ 목포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 ..... 29
- ⑥ 문화재 명칭, 국가유산으로 변경 ..... 30

## III 해양 · 농림 · 축산 분야

---

- ① 어구 생산·판매업 신고 의무제 시행(신규) ..... 32
- ② 어구 보증금제 시행(신규) ..... 33
- ③ 섬 지역 생활물류(택배) 운임 지원 ..... 34
- ④ 공익직불금 소규모 농가 지원확대 ..... 35
- ⑤ 축산물의 동물위약(외)품 안전관리 강화 ..... 36
- ⑥ 맹견의 사육허가와 기질평가 제도 도입(신규) ..... 37

## IV 안전 · 교통 · 환경 분야

---

- ①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(신규) ..... 39
- ② 자동차 소음 개선 관리·감독 강화 ..... 40
- ③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..... 41
- ④ 국내최초 순수 전기 여객선 상용화 임박 ..... 42

# V

## 세제 · 일반행정 분야

---

- ①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통합 운영 ..... 44
- ②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..... 45
- ③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..... 46
- ④ 중개보조원 신분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..... 47

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



# 보건 · 복지 · 인구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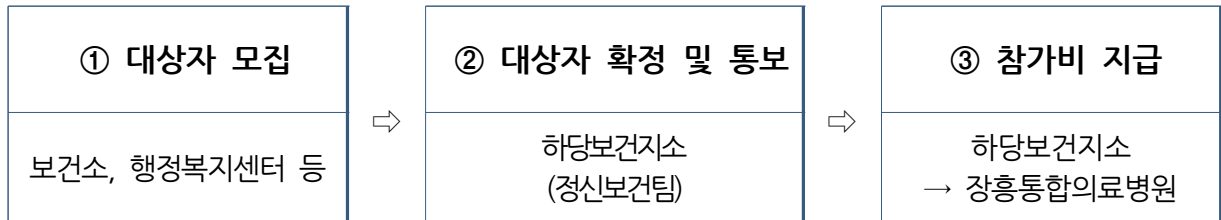


## 취약계층 마음 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(신규)

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65세이상 어르신, 청소년) 정신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음 건강 치유프로그램 참가비 지원

### □ 시책개요

- ▶ 사업대상 : 우울, 불안,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, 65세 이상 어르신, 기초생활수급자
- ▶ 사업비 : 65백만원(기금 100%)
- ▶ 지원내용 :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 건강 치유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 
- 1일 참가비 187,000원 / 1박 2일 340,000원 / 2박 3일 450,000원
- ▶ 주요프로그램 : 스트레스검사 및 기본검진, 심리검사 분석 및 상담 등
- ▶ 추진절차

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마음 건강 치유 프로그램 지원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난·감염병·사회복지 공무원</li> <li>정신건강 위험군, 소상공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난·감염병·사회복지 공무원</li> <li>정신건강 위험군, 소상공인</li> <li>청소년, 65세이상 어르신, 기초생활수급자</li> </ul>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.부터

담당부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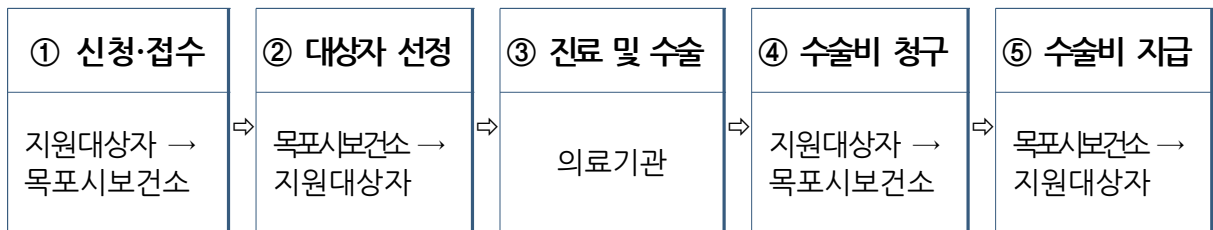
하당보건지소 정신보건팀 (☎ 270-4015)

##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목포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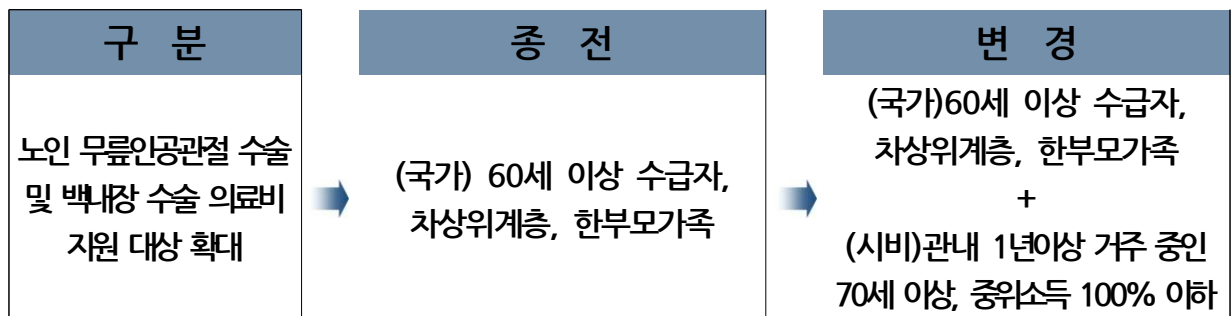
만성 퇴행성 슬관절염·백내장으로 고통받는 어르신께 인공관절·백내장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### □ 사업개요

- ▶ 사업대상: 관내 1년이상 거주 중인 70세 이상, 중위소득 100%이하인 자
  - ※ 60세 이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은 국가사업 우선 지원
- ▶ 지원액: 각 질환별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
  - 무릎(한쪽 120만원, 양쪽 240만원한도), 백내장(한쪽 20만원, 양쪽 40만원한도)
- ▶ 소요예산: 53,000천원(시비 100%)
- ▶ 지원절차

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부터

**담당부서**

건강정책과 지역보건팀 (☎270-89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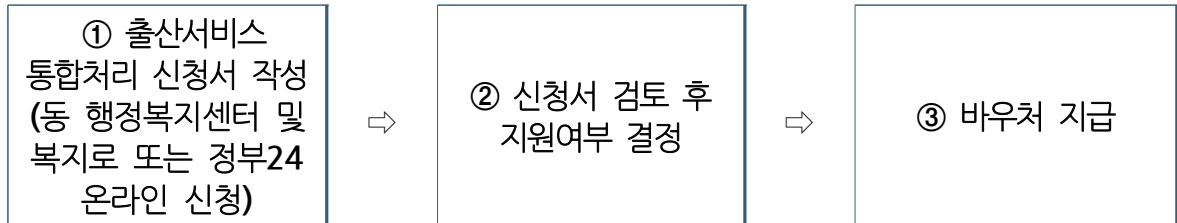
##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

전라남도

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부터 300만원을 지원해 양육부담이 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

### □ 시책개요

- ▶ 사업대상 : '24. 1. 1.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
- ▶ 사업비 : 1,903백만원(국비 75%, 도비 7%, 시비 18%)
- ▶ 지원내용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
- ▶ 사용방법 : 첫만남이용권(국민행복카드)으로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결제 및 포인트 차감
- ▶ 추진절차

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다자녀 추가 혜택	모든 자녀 바우처 200만원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00만원(첫째)</li> <li>· 300만원(둘째이상)</li> </ul>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부터

담당부서

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 (☎ 270-8926)



## 코로나19 검사 지원체계 변경

코로나19 PCR 검사 감소 및 보건소 기능 정상화를 위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고 일반의료기관 검사로 전환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60세 이상 및 12세이상 기저질환자, 면역저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검사) 의료기관(선별진료소)</li> <li>• (비용) 무료 PCR검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검사) 일반의료기관</li> <li>• (비용) 무료 PCR검사</li> </ul>
60세 이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검사) 일반의료기관</li> <li>• (비용) 무료 PCR검사</li> </ul>
의료기관 입원예정 환자·보호자 (간병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검사) 보건소 선별진료소</li> <li>• (비용) 무료 PCR검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응급·중환자실 입원환자, 고위험 입원환자, 요양병원·정신병원·요양시설 입소자 및 그 보호자(간병인)</li> <li>• (검사) 일반의료기관</li> <li>• (비용) 무료 PCR검사</li> </ul>
감염취약시설 종사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그 외 입원 예정환자 등</li> <li>• (검사) 일반의료기관</li> <li>• (비용) 전액 본인부담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검사) 일반의료기관</li> <li>• (비용) 전액 본인부담</li> </ul>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.부터

담당부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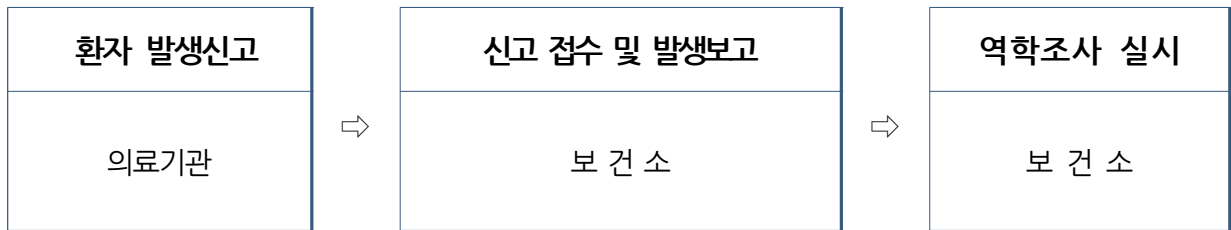
건강정책과 감염병대응팀 (☎ 270-8320)

## 매독 3급 감염병 상향 조정

매독이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, 의료기관에서는 매독 진단 시 24시간 이내에 보건소로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함

### □ 시책개요

- ▶ 신고의무자 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등
  - \*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
- ▶ 신고대상 : 매독환자
- ▶ 신고기한 : 발생 24시간 이내
- ▶ 추진절차

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매독 감염병 상향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4급 감염병</li> <li>· 표본감시</li> <li>· 표본감시 의료기관 신고</li> <li>· 7일 이내 신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3급 감염병</li> <li>· 전수감시</li> <li>·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등 신고</li> <li>· 24시간 이내 신고</li> </ul>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.부터

담당부서

건강정책과 감염병관리팀 (☎ 270-3692)

##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상승

2024년도 기초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(30% → 32%) 상향되었고 지원금액 또한 제도 시행 24년 만에 최대 인상(4인 가구 기준 13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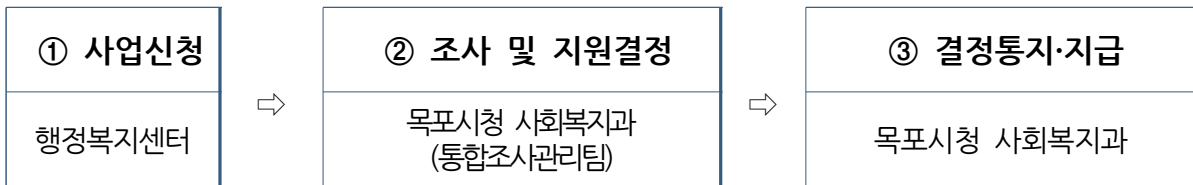
### □ 사업개요

- ▶ 사업대상 : 근로능력여부·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
- ▶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(1인 713,102원, 4인 1,833,572원)

※ 2021.10.1.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- 단,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(월 소득 834만원)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

- ▶ 지원내용 : 기초 생계급여(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)
- ▶ 추진절차

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· 선정기준 완화	·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	·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
· 지원금액 상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인 623,368원</li> <li>· 2인 1,036,846원</li> <li>· 3인 1,330,445원</li> <li>· 4인 1,620,289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인 713,102원(↑14%)</li> <li>· 2인 1,178,435원(↑14%)</li> <li>· 3인 1,508,690원(↑13%)</li> <li>· 4인 1,833,572원(↑13%)</li> </ul>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.부터

담당부서

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(☎ 270-3314)

##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
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, 부양의무자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</li> <li>·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인 수급(권)자인 경우</li> <li>· 30세 미만 시설 퇴소 (보호종료) 아동인 수급(권)자인 경우</li> <li>·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</li> <li>·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인 수급(권)자인 경우</li> <li>· 30세 미만 시설 퇴소 (보호종료) 아동인 수급(권)자인 경우</li> <li>·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</li> <li>·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⇒ 추가 * 단,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</li> </ul>
부양의무자 기본재산공제액 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급지 (대도시/중소도시/농어촌)</li> <li>· 기본재산공제액 (10,150~22,800만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4급지 (서울/경기/광역·세종·창원/기타)</li> <li>· 기본재산공제액 (19,500~36,400만원)</li> </ul>

### □ 변경개요

#### ▶ 지원대상

구 분	대 상
1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(근로무능력가구, 시설수급자, 결핵질환자,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)</li> <li>· 행려환자, 타법적용자 (이재민, 의사자 및 의사자 유족, 입양아동(18세미만), 국가유공자,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북한이탈주민, 5·18 민주화운동 관련자, 노숙인)</li> </ul>
2종	·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

※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자 중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 (월 소득 834만원)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.부터

담당부서

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(☎ 270-3326)

##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
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의 경제적 부담 완화,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지원

### □ 사업개요

#### ▶ 지원대상

-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 될 경우

- ①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
- ②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

▶ 지원내용 :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(본인 명의 계좌 이체)

▶ 신청대상 : 보호종료 예정자 또는 보호종료자

▶ 신청장소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▶ 제출서류 :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등 증빙서류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지급금액	월 40만원/인	월50만원/인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.부터

담당부서

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(☎ 270-3453)

##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규모 확대

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확대 지원

### □ 사업개요

- ▶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  
※ 단, 고등학교 재학 시(고3, 12월까지) 만22세까지
- ▶ 지원조건 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
- ▶ 지원내용 : (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) 아동양육비, 추가 아동양육비,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, 생활보조금
- ▶ 신청대상 : 지원대상 가구원·친족·기타 관계인, 공무원 직권신청(동의필요)
- ▶ 신청장소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▶ 제출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등 증빙서류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	·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· 18세 미만 자녀까지	·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· 18세 미만 자녀까지 ※ 단, 고등학교 재학 시 (고3, 12월까지) 만22세까지
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급 확대	월 20만원	월 21만원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.부터

담당부서

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(☎ 270-3283)

## 부모급여 지원

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하기 위해 0~1세 아동에게 월 50~100만원 지원

### □ 사업개요

- ▶ 지원대상 : 0~1세 아동(0~23개월 아동)
- ▶ 지원금액 : 0세 아동은 월 100만원, 1세 아동은 월 50만원 지원  
 ※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수급
- ▶ 신청방법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(복지로 또는 정부24)
- ▶ 신청자 : 아동의 보호자
- ▶ 지급시기 : 매월 25일 지급(토·일·공휴일의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)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(단위 : 만원)

구 분	종 전			→	변 경		
	연령	0세 (0~11개월)	1세 (12~23개월)		연령	0세 (0~11개월)	1세 (12~23개월)
부모급여 지원	보육	시설 미이용	월 70 (현금)		시설 미이용	월 100 (현금)	월 50 (현금)
		시설 이용	월 70 (보육료 +현금차액)	월 35 (현금)	시설 이용	월 100 (보육료 +현금차액)	월 50 (보육료 +현금차액)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.부터

담당부서

여성가족과 보육팀 (☎ 270-8221)

## 아동발달지원계좌(디딤씨앗통장)

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에 소요되는 초기비용(학자금, 취업, 창업, 주거 등)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지원규모	만 12~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(생계, 의료)	만 0~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

### □ 사업개요

- ▶ 지원대상 : 만 0~17세의 보호대상아동,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
- ▶ 지원기간 : 가입시 ~ 만 17세까지
- ▶ 신청방법 : 가입희망 아동 또는 보호자(후견인)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.부터

담당부서

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(☎ 270-8464)



##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

돌봄이 필요한 중·장년,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·가사, 병원 동행, 식사 관리, 심리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

### □ 사업개요

- ▶ 사업취지 :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
- ▶ 사업대상 :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(40~64세) 또는 질병·정신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(13~39세)이 지원 가능
- ▶ 제공서비스 : 기본서비스(재가돌봄,가사서비스) + 특화서비스(최대2개)
- ▶ 신청방법 :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

#### - 필요(증빙)서류

- 돌봄 필요성 : 진단서·소견서, 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 등
- 돌봄자 부재 : 2인 가구 이상의 경우 경제활동, 학업,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등
- 가족돌봄청년 : 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, 재직증명서(경제활동 증명) 등

### □ 추진상황

- ▶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제공기관 모집 : '24. 1. ~ 3.
- ▶ 이용자 모집 : '24. 3. ~ 12.(※제공기관 모집 후 이용자 모집공고 예정)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.부터

담당부서

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 (☎ 270-3316)

##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

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, 취약계층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

### □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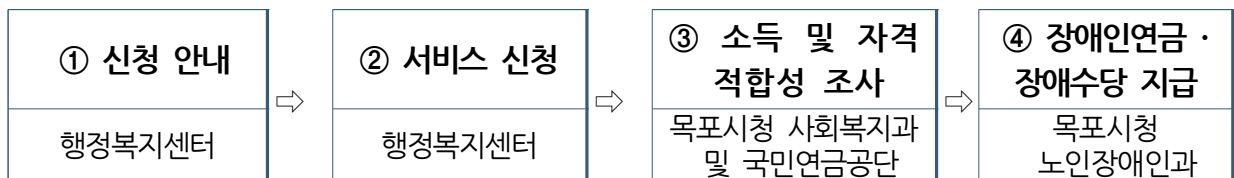
#### ▶ 지원대상

- 장애인연금 :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
 ※ 2024년 선정기준액 : 단독가구 130만원, 부부가구 208만원
- 장애수당 :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#### ▶ 지원금액

- 장애인연금 : 월 3 ~ 42.48만원
- 장애수당 : [재가] 월 6만원 / [시설] 월 3만원

#### ▶ 추진절차

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주요 내용	종 전	변 경
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정기준액 : 단독가구 122만원, 부부가구 195.2만원</li> <li>• 지급액 : 월 2~40.31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정기준액 : 단독가구 130만원, 부부가구 208만원</li> <li>• 지급액 : 월 3~42.48만원</li> </ul>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.부터

담당부서

노인장애인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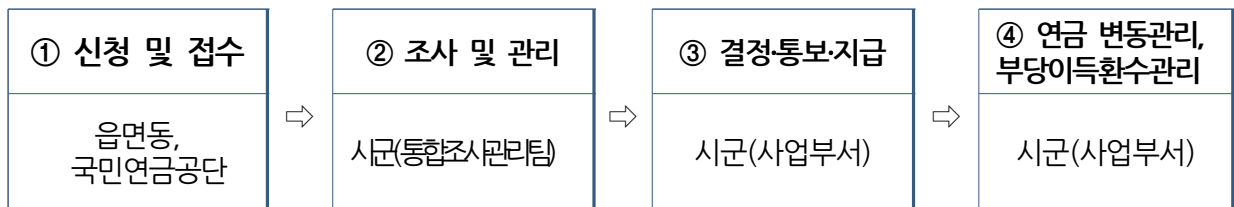
장애인복지담당 (☎ 270-8815)

##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

기초연금 전년 대비 물가연동 3.6% 인상하여 1월부터 최고 334천원 인상 지원

### □ 시책개요

- ▶ 사업대상 :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  - 제외대상 :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- ▶ 사업비 : 115,103백만원  
(국비92,087백만원<sup>80%</sup>, 도비4,603백만원<sup>4%</sup>, 시비18,413백만원<sup>16%</sup>)
- ▶ 선정기준액(24년) : 단독가구 2,130천원, 부부가구 3,408만원
- ▶ 지급액 : 최대 단독(334천원), 부부(534천원)
  - '24. 1. ~ 12. : 월 33천원(최저) ~ 334천원(최고) 차등 지급
- ▶ 추진절차

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및 고급자동차 기준 일부 삭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급액</li> <li>- 단독가구 : 32천원 ~ 323천원</li> <li>- 부부가구 : 51천원 ~ 517천원</li> <li>• 고급자동차 기준</li> <li>- 3,000cc 이상 또는 4,000만원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급액</li> <li>- 단독가구 : 33천원 ~ 334천원</li> <li>- 부부가구 : 53천원 ~ 535천원</li> <li>• 고급자동차 기준</li> <li>- 3,000cc 이상</li> </ul>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부터

담당부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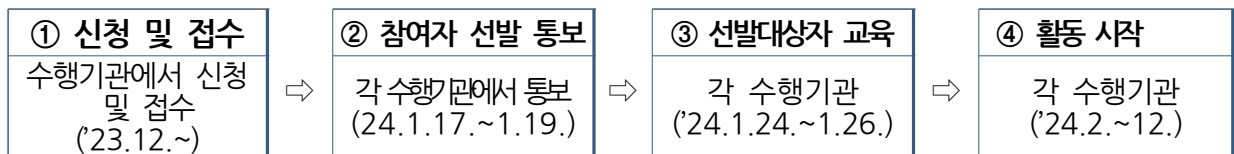
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(☎ 270-8816)

#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량 전년 대비 381명 증가, 1월부터 사업 추진

## □ 시책개요

- ▶ 사업대상 :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
  - 시장형,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(소득기준 없음)
- ▶ 사업량 : 4,187명(공익형 3,600명, 사회서비스형 414명, 시장형 120명, 취업알선형 53명)
- ▶ 수행기관 : 8개소
  - 목포시, 목포시노인복지관,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, 하당노인복지관, 하나노인복지관, (사)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, (사)건강나눔, 목포노인직업훈련센터
- ▶ 사업비 : 16,911백만원
  - (국비 8,456백만원<sup>50%</sup>, 도비 2,536백만원<sup>15%</sup>, 시비 5,919백만원<sup>35%</sup>)
- ▶ 사업내용
  - (유형) 4개 유형 : 공익형, 사회서비스형, 시장형, 취업알선형
  - (내용) 지역환경개선사업, 노노케어, 공공시설지원, 제조판매, 취업상담 및 알선 등
- ▶ 추진절차



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분	총 건	변경
① 노인일자리 사업량	① 3,806명 (공익형 3,500, 사회서비스형 170, 시장형 102, 취업알선형 30)	① 4,187명 (공익형 3,600, 사회서비스형 414, 시장형 120, 취업알선형 53)
② 참여자 활동비	② 공익형 270천원 사회서비스형 591천원	② 공익형 290천원 사회서비스형 634천원

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부터

담당부서

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(☎ 270-3341)

##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전라남도

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을 제고하고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

### □ 시책개요

- ▶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- ▶ 사업대상
  - 연 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
  - 혼 인 : 2022. 7. 4.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, 부부 모두 최초 지급
    - ※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, 초혼 여부와 관계 없음
  - 거 주
    - ①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 
(주민등록등본 주소로 확인, 지급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)
    - ② 부부 중 1명(신청자)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
(도내 주소 이전 가능, 타 시도 전출 시 지급 제외)
- ▶ 신청시기 : 혼인신고일 기준, 1년 6개월 이내 신청(도내 6개월 거주 충족)
- ▶ 신청방법 : 부부 중 1명,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▶ 지원금액 : 1부부당 200백만원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① 혼인기준	부부 중 1명 이상 초혼	부부 모두 최초(생애 1회) ※ 부부 중 누구라도 기수령시 제외
② 신청시기	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	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
③ 신청방법	여성 신청이 원칙	부부 중 1명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부터

담당부서

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 (☎ 270- 8798)

##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

전라남도

고학력·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선생님으로 채용하여 아동의 학습을 지도하고, 청년에게는 일 경험을 제공

### □ 사업개요

▶ ‘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사업’이란?

- 도내 지역아동센터에 개소당 1명씩 청년학습선생님을 배치하여 청년에게는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, 아동에게는 기초·기본 학력을 증진하는 사업

▶ 지원내용(사업)

- 지원자격 : 18 ~ 45세 대학 재학(휴학) · 졸업생
- 근무시간 : 주 5일(월~금요일), 1일 4시간 근무
- 월 급 여 : 115만원(급여 104, 교통비 11)
- 계약기간 : 2024. 10. 31.까지
- 근무내용 : 학교숙제 지도(2시간), 개별지도(2시간)

▶ 지원방법

- 전라남도 누리집 및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누리집 공고문 확인 후 지역 아동센터 전남지원단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
※ 월별 수시모집(결원발생 시)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선생님 나이 확대	18 ~ 39세	18 ~ 45세 (연령 확대)
선생님 급여 인상	월 112만원 (급여 102, 교통비 10)	월 115만원 (급여 104, 교통비 11)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부터

담당부서

인구청년정책관실 청년지원팀, 청년인구과 청년정책팀 (☎ 286-2834, 270-8490)

##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령 확대

전세사기 주 피해자인 저소득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활성화 유도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 연령 확대

### □ 사업개요

▶ 지원대상 : 목포에 주소를 둔 18~39세 이하 무주택 청년\*

\* 청년(23년 : 18~39세, 24년부터: 18~45세)

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 7천만원) 이하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('23. 1. 1. 이후)

▶ 지원금액 : 실제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(최대 30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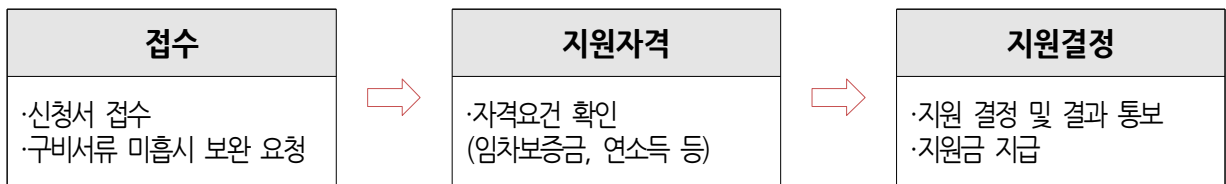
※ 제외대상
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, 공공임대주택 임차인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
▶ 제출서류
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, 본인명의 통장 사본

▶ 지원절차

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령 확대	· 목포에 주소를 둔 18~39세 이하 무주택 청년	· 목포에 주소를 둔 18~45세 이하 무주택 청년

□ 시 행 일 : 2024. 1. 1부터

담당부서

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팀 (☎ 270-3554)

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



## 일자리 · 경제 · 문화 분야





##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(신규) 전라남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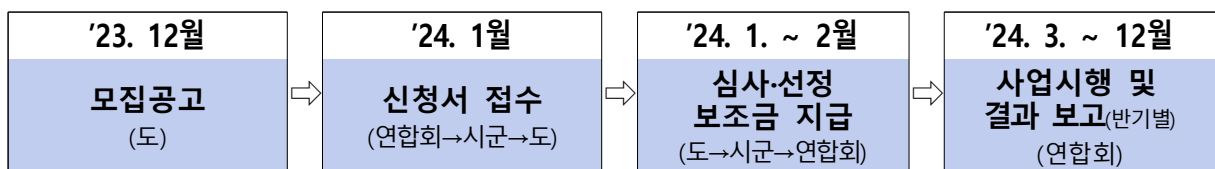
매니저 운영, 교육 등을 포함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착 및 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.

### □ 시책개요

- ▶ 사업대상 : 시·군 소상공인연합회\* (3개소 공개모집) ※ 시범운영  
\*소상공인연합회(중앙)의 승인을 받은 시·군 연합회 지부 각 1개소
- ▶ 사업비 : 90백만원(도비 27<sup>30%</sup>, 시군비 63<sup>70%</sup>), 개소별 30백만원  
※ 비급여적 인건비(퇴직금, 수당, 4대보험 등)는 연합회 자부담
- ▶ 지원내용 : 매니저 운영 및 예산범위 내에서 3개 사업 부문(공동마케팅, 온라인마케팅, 교육) 중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

구분	사업부문	사업내용
사업지원	공동마케팅	▶ (행사) 이벤트, 문화공연, 플리마켓 등 개최 ▶ (콘텐츠 제작) 스토리북, 리플렛 브랜드(BI, CI, 마스코트) 개발 등 ▶ (미디어·인터넷 홍보) TV, 지역케이블방송, SNS, 포털 등
	온라인마케팅	▶ (입점) 온라인 쇼핑몰·앱 입점 지원 ▶ (운영) 상점가 단위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 판매 관련 운영 지원
	소상공인교육	▶ (전문교육) 경영, 마케팅, 서비스, 제품개발, 세법, 회계, ICT,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
인력지원	소상공인 매니저	▶ 연합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- 정부·지자체 보조사업 신청·관리, 회계관리, 민원·홍보업무 등

#### ▶ 추진절차



### □ 시행일 : 2024. 2. 1.부터

담당부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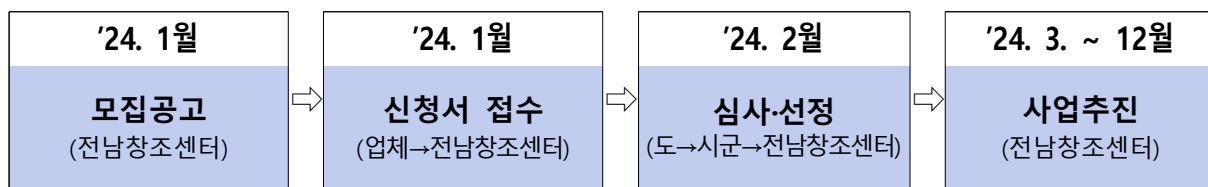
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(☎ 270-8459)

#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방안(신규) 전라남도

전남형 앵커스토어 발굴 및 로컬브랜드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 성장기반을 마련합니다.

## □ 사업개요

- ▶ 사업대상 : 지역 골목상권의 핵심점포(앵커스토어), 전남도의 자원을 활용한 상품 및 공간을 보유한 기업
  - ※ 앵커스토어 : 특정 상권을 대표하거나 상가의 핵심이 되는 유명 점포
- ▶ 사업비 : 400백만원(도비 120<sup>30%</sup>, 시군비 280<sup>70%</sup>)
- ▶ 지원규모 : 4개소 ※ 시범사업 성과평가후 확대 검토
- ▶ 수행주체 : **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**
- ▶ 지원내용
  - (사업화) 앵커스토어로서 역할 확립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
    - \* 환경개선 및 BM개발, 공동브랜드 개발, 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
  - (교육)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인식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
    - \* 기업가정신, 비즈니스모델, 마케팅 등
  - (행사) 상권활성화 및 지역내 인식제고를 위한 페스티벌(홍보행사) 개최
- ▶ 추진절차



## □ 시행일 : 2024. 1. 15.부터

담당부서

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(☎ 270-8459)

## 전남형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(신규) 전라남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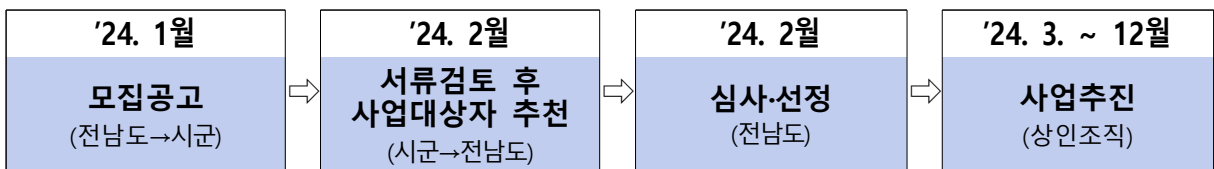
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고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등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상점가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합니다.

### □ 사업개요

- ▶ 사업대상 : 골목형 상점가(골목상권 활성화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상점가)
- ▶ 사업비 : 300백만원(도비 90<sup>30%</sup>, 시군비 210<sup>70%</sup>) / 개소당 1억원
- ▶ 지원규모 : 3개소
- ▶ 지원내용
  - (상권발굴)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특색 있는 상권 발굴 및 상인회 구성 지원
  - (역량강화) 전문가 컨설팅, 점포 컨설팅 등 상인역량강화 교육
  - (상권특화) 상권 및 점포 대표 특화상품 개발 및 상권 공동 BI구축 등
  - (상권마케팅) 고객유인 및 소비촉진행사, 홍보·마케팅, 축제 등 이벤트 등

구 분	사업 내용
홍보·마케팅	▶ 홍보물(상점가 안내지도, 리플릿 등) 제작, SNS 홍보 등 ▶ 골목 특화 테마·브랜드 개발(상호, 상표, 로고, 특화상품 등) 및 홍보 ▶ 홈페이지, 앱, 블로그 제작 및 운영 등 온라인 홍보, 영상물 제작
소비촉진행사	▶ 기간 내 골목상권에서 일정금액 소비 시 페이백(온누리상품권) 행사 ▶ 공동마케팅 사업(후기작성 이벤트, 특정시간 할인행사, 영수증 추첨 등)
축제	▶ 축제, 플리마켓, 버스킹, 문화행사, 스크래치 복권 행사 등
기타	▶ 원데이 클래스, 플리마켓, 어린이 체험학습 등

#### ▶ 추진절차

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5.부터

담당부서

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(☎ 270-8459)

##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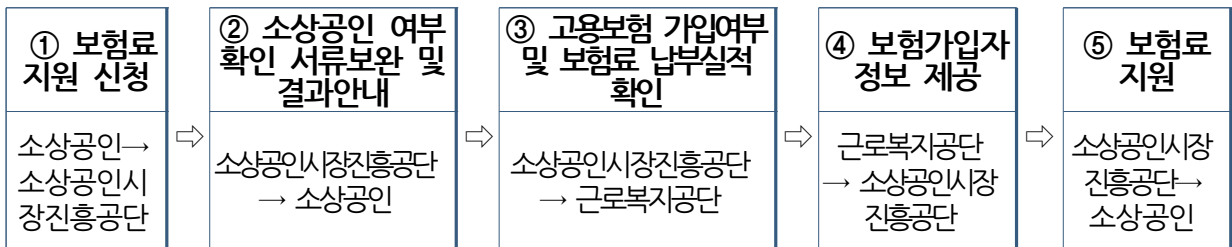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, 고용보험 사각 지대를 해소

### □ 시책개요

- ▶ 사업대상 :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
- ▶ 지원규모 : 약 40,000명 (‘23년 지원규모 25,000여명)
- ▶ 지원내용 :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
  - 납입 보험료의 50~80%를 월별 환급지원
  -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 지원

\* 고용보험 가입 : 근로복지공단 -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([total.comwel.or.kr](http://total.comwel.or.kr))  
 고용보험료 지원 : 소상공인마당 - 자영업자고용보험지원([go.sbiz.or.kr](http://go.sbiz.or.kr))

#### ▶ 추진절차

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	지원비율 - 20~50% 지원규모 - 25,000명	지원비율 - 50~80% 지원규모 - 40,000명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부터

담당부서

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(☎ 270-8785)

## 목포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 목포시

목포시 투자기업의 토지 분양가 및 시설 투자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투자유치 촉진 및 분양 활성화에 기여

### □ 입지 및 시설보조금

- ▶ 근거 :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
- ▶ 지원대상 : 전라남도, 목포시와 MOU 체결한 산단 입주 기업
  - 투자금액 20억원 이상,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
- ▶ 입지보조금
  - 지원내용 : 분양가의 20~30% 범위 내 최대 50억 한도로 지원
  - 신청기한 : 분양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
  - 지원시기 : 등기 완료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 지원(착공 후)
- ▶ 시설보조금
  - 지원내용 : 20억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10~20% 금액을 50억 한도로 지원
  - \*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 제외
  - 신청기한 : 건축물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
  - 지원시기 : 시설을 준공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 지원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지원비율 조정 지원금액 확대	(입지) 부지매입금 30% 4억 원 한도 (시설) 20억 초과 투자액 5% 5억 원 한도	(입지) 부지매입금 20~30% 50억 원 한도 (시설) 20억원 초과 투자액 10~20% 50억 원 한도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상반기(예정)

담당부서

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 (☎ 270-8888)

## 문화재 명칭, 국가유산으로 변경

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에서 국제기준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문화 자연 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

### □ 변경개요

- ▶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 시행(24. 5. 17.)에 따라 “문화재”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시행
  - 국가유산기본법 →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(개정),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(제정),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(개정)
- ▶ 국제기준(유네스코 유산체계)에 부합하는 문화재 명칭 · 분류체계 전면적 개선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문화재 명칭, 국가유산으로 변경	문화재	국가유산
	유형문화재	유형문화유산
	기념물(사적지류)	기념물(사적지류)
	민속문화재	민속문화유산
	기념물(명승류, 천연기념물류)	자연유산
	무형문화재	무형유산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5. 17.부터

담당부서

도시문화재과 문화유산팀 (☎ 270-8320)

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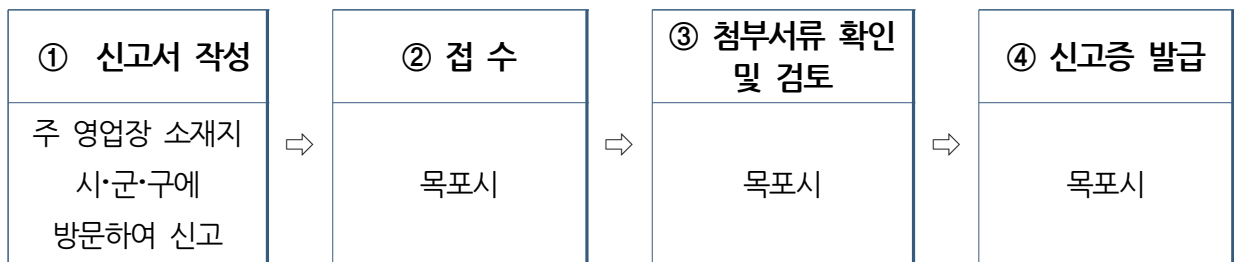
# 해양 · 농림 · 축산 분야

## 어구 생산·판매업 신고 의무제 시행(신규)

해양환경보전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구 관리제도 강화

### □ 시책개요

- ▶ 신고대상자 : 어업용 어구 중 신고대상 어구나 어구 자재를 생산·판매·수입하려는 자
  - ※ 다만, 법 시행('23. 1. 12.) 이전부터 어구 생산·판매·수입하는 자도 포함
- ▶ 신고대상자 의무사항
  -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 구매자 수량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
  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24조(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) 준수
    - ※ (벌칙) 과태료(2백만원 이하) 및 행정처분(3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)
- ▶ 신고절차

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어구 생산·판매업 신고제	어구를 생산·판매하는 자는 어구 생산·판매업 신고 불필요	어구를 생산·판매하는 자는 어구 생산·판매업 신고 의무화

□ 시 행 일 : 2024. 1. 12.부터( '23. 1. 12. ~ 24. 1. 11. 계도기간 운영)

담당부서

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(☎ 270-34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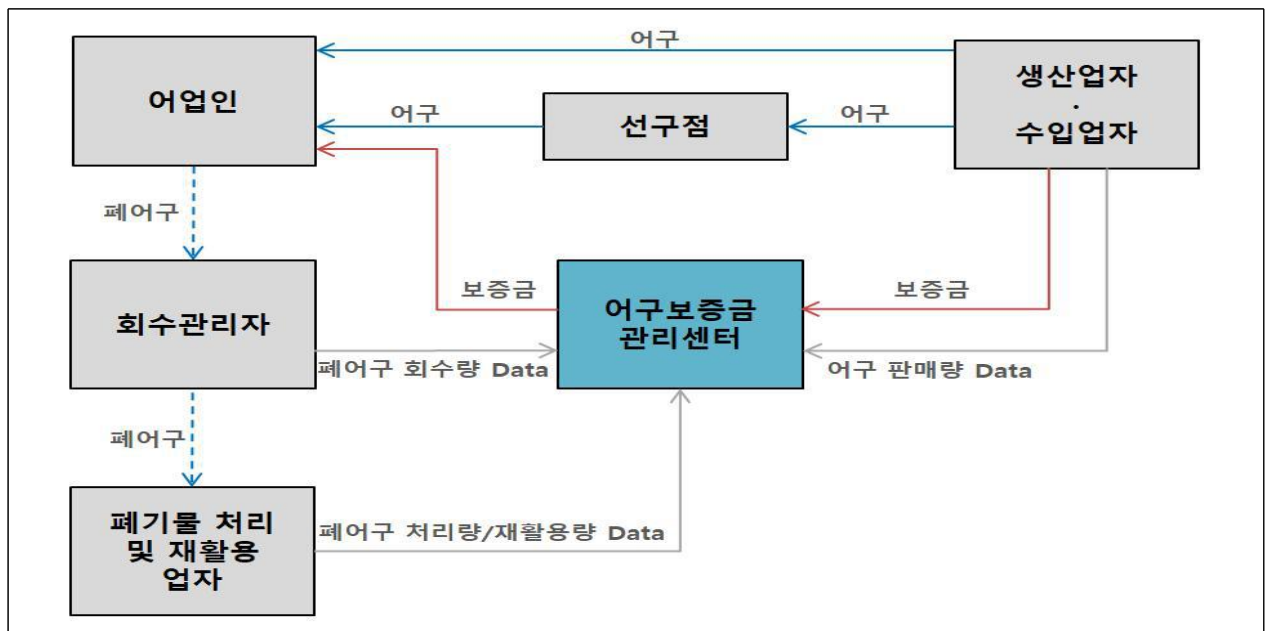


## 어구 보증금제 시행 (신규)

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어구를 육상에 지정된 장소로 되가져오면 어구 가격에 포함된 일정금액(보증금)을 돌려 드립니다.

### □ 시책개요

- ▶ 적용대상자 : 어구 생산 및 수입업체, 통발 어업인
- ▶ 보증금 부과 대상 : 통발 어구부터 우선 시행
  - ※ 단계적으로 자망어구, 부표 등으로 확대
- ▶ 보증금액 : 통발 어구 종류별 일정 금액
- ▶ 회수관리체계

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수거대상 어구 (통발)	자체 구매사업에 따라 폐통발 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증금 (미)대상 폐통발 ⇒ 환급</li> <li>• 수거대상 이외 어구 ⇒ 자체 구매</li> </ul>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2.부터

담당부서

수산산업과장 어업지원팀 (☎ 270-3411)

## 섬 지역 생활물류(택배) 운임 지원

도서 지역이라 육지와 다르게 추가 택배비를 지불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

### □ 지원대상

- ▶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및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업자 (대표자)의 개인·법인 사업체

### □ 지원내용

- ▶ 기간 : 지자체별 사업비 소진시까지 연중지원
- ▶ 지원액 :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·군별로 1건당 지원 한도액 설정(평균 3천원)

### □ 신청방법

- ▶ 신청장소 : 거주지 읍·면·동사무소
- ▶ 제출서류 : (개 인) 신청서, 택배 증빙자료, 신분증·통장 사본  
(사 업 체) 신청서, 택배 증빙자료, 사업자등록증 사본

### □ 시 행 일 : 2023. 8. 1.부터

담당부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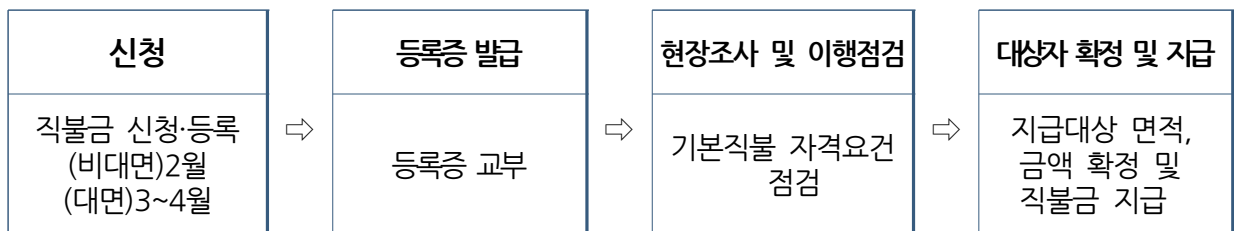
해양항만과 항만물류팀 ☎ 270-8320

## 공익직불금 소규모 농가 지원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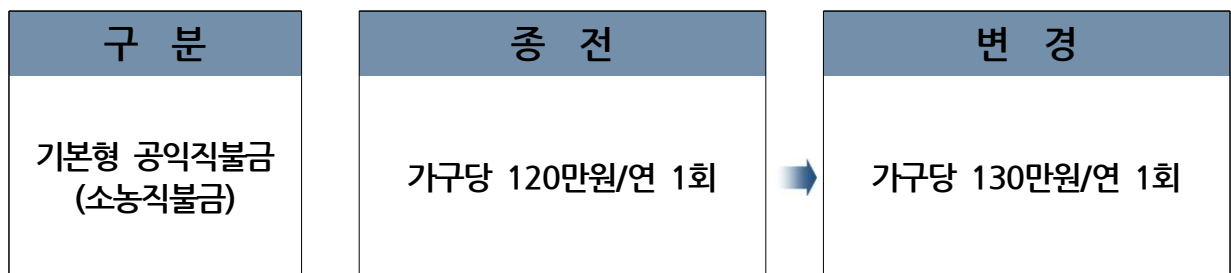
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'소농 직불금'이 4년만에 10만원 인상되어 130만원이 지급됩니다.

### □ 시책개요

- ▶ 사업대상 :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1,000m<sup>2</sup> 이상 농지의 실경작하는 농업인
- ▶ 지급조건 : 종전의 쌀·밭·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
  - 농가 구성원 경작면적 5,000m<sup>2</sup> 이하(전체 농가 구성원 15,500m<sup>2</sup> 미만 소유)
  -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
  - 농업외소득 농업인 20백만원, 전체 농가구성원 45백만원 미만
  - 축산업소득 56백만원, 시설재배업소득 38백만원 미만
- ▶ 추진절차

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.부터

담당부서

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팀(☎ 270-3421)

## 축산물의 동물 의약(외)품 안전관리 강화

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 의약(외)품 중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물질에 대해 '불검출'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분	종전	변경
동물용 의약(외)품 기준 미설정 물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CODEX 기준</li> <li>· 유사축종 최저기준</li> <li>· 항균제 0.01mg/kg 이하</li> </ul>	0.01mg/kg 이하 일괄 적용 (성장보조제,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'불검출' 적용)

### □ 변경개요

- ▶ '축산물 PLS'란? ※ PLS(Positive List System) :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
  - 소·돼지·닭고기, 우유,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 되어 있는 동물용 의약(외)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(0.01mg/kg)을 적용
- ▶ 축산농장마다 지켜야 할 사항(주의할 점)

 <h4>양돈농장은?</h4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구충제가 첨가된 배합사료를 급여할 경우, 동일 성분의 동물약품이 <b>중복투여 되지 않도록 주의</b>합니다.</li> <li>2 도축출하 전 휴약기간 동안은 <b>약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사료만 급여</b>합니다.</li> <li>3 동물용 의약품이 첨가된 사료와 무첨가 사료가 <b>혼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관</b>해야 합니다.</li> </ol>	 <h4>한우농장은?</h4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소, 돼지, 닭 등 다축종 적용 약품 사용 시에 사전에 '<b>소</b>'에서의 휴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.</li> <li>2 동일한 성분의 약품일지라도 제조사마다 <b>휴약기간</b>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<b>사용설명서</b>를 확인합니다.</li> <li>3 동물용 의약품의 오·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에 <b>처방한 약품</b>을 사용합니다.</li> </ol>
 <h4>산란계·육계농장은?</h4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'닭'에 허가된 약품일지라도 '<b>산란 중에는 사용금지</b>'라고 표기된 제품은 산란 중인 닭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</li> <li>2 만일 살충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동물용 의약(외)품으로 <b>허가된 동물용 살충제</b>를 사용하되, 계사를 완전히 비운 후 사용합니다.</li> <li>3 알에 휴약기간이 있는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<b>약품 투여 중 및 휴약기간 동안 알을 폐기</b>해야 합니다.</li> </ol>	 <h4>젖소농장은?</h4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<b>소</b>에는 허가되었으나 <b>젖소</b>에 사용금지된 약품이 있으므로 젖소에 사용해도 되는지 사전에 반드시 <b>사용설명서</b>를 확인합니다.</li> <li>2 우유에 휴약기간이 설정된 경우 <b>약품투여 중 및 휴약기간 동안에는 우유를 폐기</b>해야 합니다.</li> <li>3 동물용 의약(외)품을 사용한 젖소는 개체식별띠 등을 이용해 <b>별도 착유·관리</b>합니다.</li> </ol>

### □ 시행일 : 2024. 12. 1.부터

담당부서

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 (☎ 270-8472)

## 맹견의 사육허가와 기질평가 제도 도입(신규)

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 허가제를 신규 도입하여 견주의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

### ▶ 사업취지

- 개물림 사고의 발생 증가에 따른 맹견 및 개물림 사고견에 대한 기질평가제 및 맹견사육허가제 도입하여 안전관리 강화

### ▶ 핵심내용

-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시행

## □ 관련내용

### ▶ 맹견사육허가제란?

- 6개월령 이상의 맹견 5종\*에 대하여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
- 맹견 외 사고견도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 후 사육허가

\* 맹견의 종류 : 도사견,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,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,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

### ▶ 기질평가란?

- 동물의 건강상태,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맹견에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
- 기질평가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것  
⇒ 맹견소유자는 동물 등록, 보험 가입, 중성화 수술 완료 후 신청 가능

### ▶ 기질평가 비용 부담은?

- 소유자 부담이며, 기질평가 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

## □ 시 행 일 : 2024. 4. 27.부터

담당부서

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(☎ 270-8465)

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



# 안전 · 교통 · 환경 분야



##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(신규)

고가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동차 보험이  
할증되는 고가차 기준인 **8천만원 이상** 법인승용차에 전용번호판 적용

### □ 시책개요

- ▶ 배 경 : 고가의 ‘슈퍼카’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에 대한 비판여론이 증가하면서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 추진
- ▶ 목 적 :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여 일반 승용차와 구분이 가능하게 하고, 사적이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유도
- ▶ 적용대상 : 법인 소유, 법인이 리스·렌트한 차량과 공용차량이 대상
  - (법인 소유) 자동차등록신청서 상 소유자가 법인(성명, 법인등록번호)인 승용차, 운수사업용(택시, 버스, 렌트 등) 및 리스사 소유 승용차는 제외
  - (법인 리스) 리스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한 차량
  - (법인 렌트) 렌트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(1년 이상)한 차량
  - (공용 차량) 관용 차량(등록신청서 상) 또는 번호판 고시 제1조의2제5호가목에 따른 기관들이 임차(리스·렌트)한 차량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고가의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	· 일반 차량들과 동일한 번호판 사용	· 차량가액 8,000만원 이상의 법인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적용

### □ 시 행 일 : 2023. 1. 1.부터

담당부서

자동차등록사무소 자동차등록팀 (☎ 270-8135)

## 자동차 소음 개선 관리·감독 강화

자동차의 소음관리 수시점검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배기 소음을 줄임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운행차 수시점검	지자체 운행차 수시 점검 가능	지자체 운행차 수시 점검 의무화

### □ 구체적 사항

#### ▶ 운행차 점검사항

- 운행차의 소음이 \***운행차 소음허용기준**에 적합한지 여부

\*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됨

\*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인증·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[dB(A)]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함

-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
-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6. 14.부터

담당부서

기후환경과 행정지도팀 (☎ 270-3332)



##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

미래 세대와 함께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스티로폼(발포폴리스티렌)부표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

### □ 변경개요

- ▶ 「어장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모든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2023년 11월 13일부터 금지
-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
\* (1차) 50만원, (2차) 100만원, (3차) 200만원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양식장, 어장 등에 사용하는 부표 종류	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가능	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

### □ 시 행 일 : 2023. 11. 13.부터

담당부서

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(☎ 270-3622)

## 국내최초 순수 전기 여객선 상용화 임박 전라남도

탄소중립 실현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바다 위의 전기차, 친환경 전기 여객선(차도선)이 곧 운항을 시작

### □ 사업개요

#### ▶ 사업취지

- 무탄소 전기 선박 개발로 해운분야 미세먼지 제로화

#### ▶ 핵심내용

- 전기 차도선 개발(국내최초),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(세계최초)

#### ▶ 사업장소

- 전라남도 목포시(남항 등)

#### ▶ 사업기간

- 2020년 ~ 2024년

#### ▶ 전기추진 차도선이란?

- 연료유나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이 아닌 100% 순수전기 추진 동력만으로 사람과 차량을 수송하는 선박

#### ▶ 장점은?

- 기존 연료유 선박과 달리 매연이 없고 소음·진동이 적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
- 또한,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은 도서 지역의 불안정한 전력 수급에 대비한 예비 전력으로도 활용 가능

- ▶ '24년까지 실증 운항 및 최적화 작업이 끝나면 '25년부터 전기 선박 이용 가능

□ **시행일(실증운항) : 2023. 6.** ※ 목포권 시범운항 예정 : 2025년

담당부서

지역경제과 신산업팀 (☎ 270-4049)

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

# 세 제 · 일 반 행 정 분 야

##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통합 운영

별개로 운영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여, 납세편의 제고 및 조세체계 통일성 위한 일원화 추진

### □ 현행 가산세 및 가산금 체계

- ▶ (납부불성실가산세) 신고납부 세목을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(일할, 「지방세기본법」 §55)
- ▶ (가산금) 지방세(전 세목)를 납부고지서 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(1회, 「지방세징수법」 §30)
- ▶ (증가산금) 지방세(전 세목)를 납부기한 이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(체납 후 매 1개월) 고지세액에 추가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(월할, 「지방세징수법」 §31)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- ▶ 납부지연에 대해 유사한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중부과로 오해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산금을 가산세로 통합
  - 「지방세징수법」§30, §31 삭제
  - 「지방세기본법」§55 개정

개정 전		개정 후	
가 산 세	무신고가산세	가 산 세	
	과소신고가산세		
	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		
	납부불성실가산세(1일 0.022%)		
가 산 금	가산금(1회 3%)	납부 지연 가산세	납부·부과고지 전(1일 0.022%)
	증가산금(매월 0.75%)	고지서 납부기한 경과(1회 3%)	고지서 납부기한 경과(매월 0.66%)

### □ 적용시기 : 2024. 1. 1.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

담당부서

세정과 부과담당 (☎ 270-3298)

##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

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의 할인율 변경

### □ 시책개요

▶ 자동차세 연납 신청 · 납부기간

구분	할인율	비고
1월	연세액의 약 4.5%	11개월분 (2~12월)의 5%
3월	연세액의 약 3.7%	9개월분 (4~12월)의 5%
6월	연세액의 약 2.5%	6개월분 (7~12월)의 5%
9월	연세액의 약 1.2%	3개월분 (10~12월)의 5%

▶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

- 방문 : 목포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
- 온라인 : 지방세 포털사이트 '위택스' (<https://www.wetax.go.kr>) 또는 '스마트 위택스' 앱을 통해 신청

▶ 자동차세 향후 연납 할인율 변경

-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변경
- 2024년 **4.5%**(2023년 6.4%), 2025년 이후에는 2.7%로 변경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분	종 전	변 경
자동차세 연납 할인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월 연납 : 6.4% 세액공제</li> <li>· 3월 연납 : 5.2% 세액공제</li> <li>· 6월 연납 : 3.5% 세액공제</li> <li>· 9월 연납 : 1.7% 세액공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월 연납 : <b>4.5%</b> 세액공제</li> <li>· 3월 연납 : <b>3.7%</b> 세액공제</li> <li>· 6월 연납 : <b>2.5%</b> 세액공제</li> <li>· 9월 연납 : <b>1.2%</b> 세액공제</li> </ul>

### □ 시 행 일 : 2024. 1. 1. 부터

담당부서

세정과 부과2담당 ☎ 270-8454

##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

2024. 6. 1.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미신고,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### □ 변경개요

▶ ‘주택임대차신고’란?

- 도내 시 지역(목포, 여수, 순천, 나주, 광양)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택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

▶ 신고내용 :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, 임대차 주택 종류 및 소재지, 임대료, 계약기간 등

▶ 신고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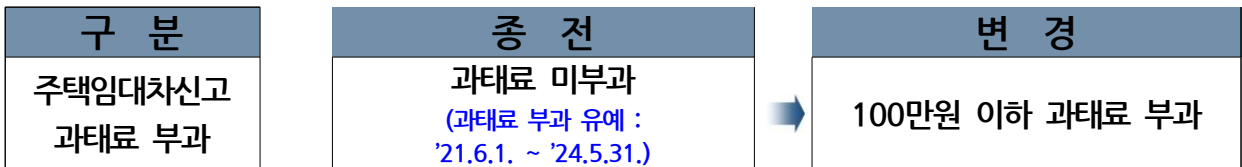
- 신고인 : 임대인 및 임차인
- 신고장소 : 주택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신고방법 : 주택임대차신고서 작성 제출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온라인) 접수

▶ 과태료

※ 거짓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지연신고 기간	과태료
3개월 이하	15만원 이하
3개월 초과~6개월 이하	45만원 이하
6개월 초과~1년 이하	70만원 이하
1년 초과~2년 이하	80만원 이하
2년 초과	100만원 이하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

### □ 시행일 : 2024. 6. 1.부터

## 중개보조원 신분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

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고객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됨

### □ 변경개요

- ▶ 중개보조원이란?
  -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
- ▶ 도입된 배경
  - 최근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계약을 진행하는 불법중개행위가 발생하여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으로 정해짐
- ▶ 중개보조원 현황은 디지털 트윈국토 사이트(www.vworld.kr)에서 확인 가능
- ▶ 고지의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 □ 달라지는 내용

구 분	종 전	변 경
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	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	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함

### □ 시 행 일 : 2023. 10. 19.부터

담당부서

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 (☎ 270-8640)

희망찬 도약!  
청년이 찾는 큰 목표